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金炳旭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520 발의연월일: 2020. 7. 30.

발 의 자:金炳旭・추경호・강대식

정희용・류성걸・김희국

임이자 · 이태규 · 박성민

이종배 · 김도읍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사중단 건축물을 정비하기 위하여 시·도지사가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건축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뒤 확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정비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건축위원회의 심의 생략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해야 함에 따라 정비계획의 변경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정비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지방의회의 의견청 취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속한 정비계획 변경에 기여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4항 신설).

법률 제 호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견청취와 건축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조제3항 후단 중 "제6조제4항"을 "제6조제5항"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	제6조(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
의 수립 등) ①・② (생 략)	의 수립 등) ①·② (현행과 같
	승)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③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건축법」 제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건축위원	
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하	
여야 한다. <u>다만</u> , 대통령령으로	<u><단서 삭제></u>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	
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u>다.</u>	
<u><신 설></u>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
	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
	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견청취와 건축위
	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아
	<u>니할 수 있다.</u>
<u>④</u> (생 략)	<u>⑤</u> (현행 제4항과 같음)
제11조(공사중단 건축물등의 취	제11조(공사중단 건축물등의 취
득) ①·② (생 략)	득)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라 「공익사업을	③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	

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
또는 수용의 방법으로 공사중
단 건축물등을 취득하는 경우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
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
률」을 준용한다. 이 경우 <u>제6</u>
조제4항에 따른 정비계획의 고
시가 있은 때에는 「공익사업
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
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
른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것
으로 본다.

④ (생 략)

제6조제
5 কু
④ (현행과 같음)